

안양시 사무위임 규칙

제정	1993.	1. 28.	규칙	제 752호
개정	1993.	3. 15.	규칙	제 769호
전문개정	1993.	11. 11.	규칙	제 807호
전문개정	1994.	8. 9.	규칙	제 856호
개정	1994.	8. 13.	규칙	제 858호
개정	1994.	11. 29.	규칙	제 880호
개정	1994.	10. 20.	규칙	제 923호
개정	1996.	6. 26.	규칙	제 956호
개정	1999.	6. 1.	규칙	제 1029호
개정	1999.	9. 1.	규칙	제 1047호
개정	2000.	10. 12.	규칙	제 1080호
개정	2001.	12. 31.	규칙	제 1115호
개정	2003.	12. 16.	규칙	제 1157호
개정	2005.	3. 29.	규칙	(제명 변경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 제 1183호
개정	2009.	1. 6.	규칙	제 1251호
일부개정	2010.	6. 28.	규칙	제 1277호
일부개정	2010.	10. 7.	규칙	제 1282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11.	2. 8.	규칙	제 1289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11.	6. 27.	규칙	제 1304호
일부개정	2011.	12. 29.	규칙	제 1315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12.	2. 10.	규칙	제 1319호
일부개정	2013.	10. 8.	규칙	제 1370호
일부개정	2014.	1. 17.	규칙	제 1381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14.	12. 24.	규칙	제 1410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16.	1. 29.	규칙	제 1439호
일부개정	2016.	6. 29.	규칙	제 1446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17.	6. 15.	규칙	제 1477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19.	10. 28.	규칙	제 1547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20.	7. 10.	규칙	제 1569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20.	10. 21.	규칙	제 1578호
일부개정	2021.	7. 9.	규칙	제 1598호
일부개정	2021.	12. 1.	규칙	(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) 제 1603호
일부개정	2022.	12. 30.	규칙	제 1627호(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)
일부개정	2023.	5. 22.	규칙	제 1637호
일부개정	2023.	12. 29.	규칙	제 1654호
일부개정	2024.	12. 31.	규칙	제 168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「지방자치법」 제 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. 6., 2016. 1. 29., 2021. 12. 1.>

제2조(위임사항)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4. 12. 2, 2016. 1. 29.>

안양시 사무위임 규칙

제3조(감독)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안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9.>

제4조(권한과 책임의 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.

[전문개정 2016. 1. 29.]

부칙 <1994. 8. 9. 규칙 제856호 전문개정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 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1994. 8. 13. 규칙 제85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4. 11. 29. 규칙 제88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94. 10. 20. 규칙 제92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6. 26. 규칙 제95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6. 1. 규칙 제102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9. 1. 규칙 제104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00. 10. 12. 규칙 제1080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1. 12. 31. 규칙 제1115호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5. 3. 29. 규칙 제1183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안양시사무위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중 소관부서란에 상하수도사업소(하수과)를 신설하고, 소관부서란의 “건설사업소(건설과)”를 “건설사업소(재난안전과)로 하며, 동소관부서의 일련 번호 “52 내지 61”을 상하수도사업소(하수과) 일련번호 “1 내지 10”으로 한다.

부칙 <2009. 1. 6. 규칙 제125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6. 28. 규칙 제127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0. 7. 규칙 제1282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2. 8. 규칙 제128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안양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④ 및 ⑤ 생략

부칙 <2011. 6. 27. 규칙 제130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2. 29. 규칙 제1315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안양시 사무위임 규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생략

부칙 <2012. 2. 10 규칙 제131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0. 8 규칙 제137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. 17 규칙 제1381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

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안양시 사무위임 규칙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를 별지(붙임1)와 같이 한다.

(붙임 1) 생략

②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12. 24 규칙 제1410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

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안양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구청장”을 “구청장 및 동장”으로 하고, [별표] 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② 부터 ⑩ 까지 생략

별지 생략

부칙 <2016. 1. 29. 규칙 제143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6. 29 규칙 제1446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

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②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6. 15 규칙 제1477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안양시 사무위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② 부터 ⑯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10. 28 규칙 제1547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안양시 사무위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별표 중 제4호(종전의 제3호) 소관부서란 중 “청소행정과”를“자원순환과”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 <2020. 7. 10 규칙 제1569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안양시 사무위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생략 [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<2020. 7. 6 규칙 제1569호> 참조]

부칙 <2020. 10. 21 규칙 제157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7. 9 규칙 제159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양시 사무위임 규칙

부칙 <2021. 12. 1. 규칙 제1603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

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2. 30. 규칙 제1627호,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
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안양시 사무위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생략 [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<2022. 12. 30. 규칙 제1627호> 참조]

③ 부터 ⑦ 까지 생략

부칙 <2023. 5. 22. 규칙 제163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2. 29. 규칙 제1654호>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2. 31. 규칙 제1680호>

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4. 12. 31.>

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(제2조 관련)

1. 기획경제실

소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기획경제과	<p>1.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계량증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②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 단속 ③ 계량기 검사 ④ 보고 및 수시검사 ⑤ 계량증명서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조 • 같은 법 제52조 • 같은 법 제30조 • 같은 법 제31조 • 같은 법 제13조 	구청장
세정과	<p>1.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납세의 고지 【다만, 다음의 사무는 제외한다 ▶ 차량취득세 및 차량관련 등록면허세 신고분 납부서 발급 ▶ 차량취득세 및 차량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·감면 확인서 발급 ▶ 차량 및 기계장비에 관한 부과·징수】 ② 고지서의 교부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③ 부과취소 및 변경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④ 납기전 징수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⑤ 납부기한의 연장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⑥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2조, 제13조 •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2조, 제13조 •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8조 •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2조 •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, 제27조 •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 •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	구청장

안양시 사무위임 규칙

소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⑦ 도세 징수유예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⑧ 과오납금의 처리(환부이자 계산)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⑨ 서류의 송달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 ⑩ 공시송달 【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	
징수과	1.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체납처분 (정리보류분 체납세의 체납처분 제외) ② 정리보류 ③ 소멸시효 ④ 교부청구 ⑤ 관허사업의 제한 ⑥ 징수촉탁 ⑦ 교부금전의 예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같은 법 제106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9조, 제40조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8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3조 	구청장

2. 안전행정국

소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안전정책과	1. 전시 병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징병검사 · 현역병입영 ·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교부, 결과통보 ② 징병검사 독려, 현역병 · 병력동원 소집 입영의 독려 ③ 기피자 고발, 색출 및 단속의 지원 ④ 병역의무자 신상변동사항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병역법」 제83조제3항 같은 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제83조제4항 	동장
시민봉사과	1. 자동차 압류 및 해제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압류 및 해제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4조 	구청장

3. 도시주택국

소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시계획과	<p>1.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① 과태료 부과 징수</p> <p>②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통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공인중개사법」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	구청장

4. 도로교통국

소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로과	<p>1.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①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</p> <p>② 적성검사</p> <p>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처분</p> <p>④ 과태료 부과 · 징수 (위임된 사무에 한정함)</p> <p>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</p> <p>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</p> <p>⑦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및 건설 기계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의 처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26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, 제82조 	구청장

5. 환경국

소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환경정책과	<p>1.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 공해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①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 정기검사·조사 및 보고 ② 개선명령, 사용중지·사용제한 명령 ③ 보고 및 검사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</p> <p>2.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①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	구청장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4 	구청장
기후대기과	<p>1.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① 공회전의 제한 ②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(저감장치 부착차량 매연)</p> <p>2.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에 관한 사무(대기 분야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, 시장이 설치한 배출시설은 제외)</p> <p>① 개선명령 ② 조업정지명령 등 ③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·조정, 징수유예·분할납부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	구청장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, 제35조의2 제35조의3, 제35조의4 	구청장

소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<p>④ 허가의 취소 등</p> <p>⑤ 과정금 처분</p> <p>⑥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</p> <p>⑦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</p> <p>3.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(전압 10만V 미만으로서 용량 1,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함)</p> <p>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 설비의 소유자·점유자에 대한 기술수준에의 적합명령</p> <p>② 과태료의 부과·징수 (위임된 사무에 한정함) 규모인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, 시장이 설치한 배출시설은 제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「전기사업법」 제71조 같은 법 제108조 	구청장
자원순환과	<p>1. 폐기물처리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① 폐기물처리 신고 (제1항 제2호, 제3호 및 제3항, 제5항에 의함.)</p> <p>②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</p> <p>③ 폐기물처리 신고, 미신고 대상 사업장 관리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	구청장

소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생태하천과	<p>1.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① 권리 · 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수리 등</p> <p>② 하천의 유지보수 (하천내 주민편익시설 일체와 준설 등)</p> <p>③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(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항목은 제외)</p> <p>④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</p> <p>⑤ 위임사무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</p> <p>⑥ 원상회복명령,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,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 회복의 예치</p> <p>⑦ 부담금의 강제 징수</p> <p>⑧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</p> <p>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</p> <p>⑩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</p> <p>⑪ 하천관리원 임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하천법」 제5조 • 같은 법 제27조제6항 • 같은 법 제33조 • 같은 법 제36조 제1항, 제2항 • 같은 법 제37조 • 같은 법 제48조 • 같은 법 제67조 • 같은 법 제68조 • 같은 법 제69조 • 같은 법 제70조 • 같은 법 제72조 	구청장

소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<p>⑫ 점용료 등의 제거, 보관, 처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</p> <p>⑬ 하천관리 상황 등의 점검</p> <p>⑭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(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)</p> <p>⑮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(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)</p> <p>⑯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(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)</p> <p>⑰ 하천표지(기준 하천표지의 유지관리와 보수에 한정함)</p> <p>⑱ 보고 및 출입 등 (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)</p> <p>⑲ 과태료의 부과·징수 (위임된 사무에 한정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같은 법 제73조 • 같은 법 제74조 • 같은 법 제75조 • 같은 법 제76조 • 같은 법 제77조 • 같은 법 제83조 • 같은 법 제90조 • 같은 법 제98조 	
녹지과	<p>1. 도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① 무단점유,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등 조치</p>	<p>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</p> <p>제83조</p>	구청장